##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717 발의연월일: 2023. 6. 16.

발 의 자: 박대출・金炳旭・김용판

이양수 • 류성걸 • 권명호

김예지 • 이헌승 • 유경준

정경희 · 한무경 · 정우택

이명수 · 이만희 · 김정재

이채익 • 노용호 • 지성호

강대식 • 송석준 • 유두현

이태규 • 유상범 • 김영식

양금희 의원(2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는 최초 수사단계에서 '특정강력범죄'가 아닌 '중상해' 등으로 의율하면서 신상공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였고, 기소 후 피의자의 DNA가 발견되는 등 추가 범죄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이미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면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신상공개가 불발, 이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바 있음.

이에 '피의자' 뿐만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토록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 신상공개 요건에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를 추가하여 신상공개 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 법률 제 호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중 "피의자의"를 "피의자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강력범죄사건의"를 "특정강력범죄사건 또는 형사사건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특정강력범죄사건일"을 "특정강력범죄사건 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여성·청소년 대상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형사사건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검사는 피고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원에 특정강력범죄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한하여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고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의 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의자 등의 얼굴 등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 <u>피의자의</u> 얼굴 등 공개)	제8조의2( <u>피의자 등의</u> 얼굴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공개) 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u>특</u>	
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	특정강력범죄사건 또는 형
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	사사건의
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1
피해가 발생한 <u>특정강력범죄</u>	<u>특정강력범죄</u>
<u>사건일</u> 것	사건 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
	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여
	성·청소년 대상 「형법 <u>」</u>
	제258조(중상해・존속중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
	조(폭행치사)의 형사사건일
	_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검사는 피고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원에 특정강력범죄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 <신 설>

<u>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u>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고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의 공개 결정을할 수 있다.